

【 호적법 10문 】

【문41】 다음은 개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호주승계로 인한 신호적 편제시 호적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기하였으나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면, 현재의 이름을 본래의 자신 이름(舊名)으로 고치려면 다시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출생신고인이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개명이 아닌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호적부상 이름에 쓰인 한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 경우에는 호적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 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에 의한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으므로 나중에 한 재판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한 때에는 그 호적기재는 유효하다.
- 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문42】 다음은 인지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者)에 대하여서는 그 부(父)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 ② 사망한 자(子)에 대하여는 비록 그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할 수 없다.
- ③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④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지할 수 있다.
- ⑤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3】 다음은 호적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자의 본관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사항에 관하여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설사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실제와 같다 하더라도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지 않는 한 호적에 기재된 출생일에 따라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 ⑤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류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문44】 갑남과 을녀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인 바, 두 사람은 2005. 5. 16.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우송하였다. 같은 해 5. 18. 갑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녀는 사망신고서를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같은 해 5. 22. 호적관서에 제출하였고, 한편 혼인신고서는 같은 해 5. 23. 호적관서에 도착하여 접수·수리되었다. 이 경우 갑남과 을녀의 혼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

- ① 2005. 5. 16.
- ② 2005. 5. 18.
- ③ 2005. 5. 22.
- ④ 2005. 5. 23.
- ⑤ 혼인신고서가 사망한 후에 접수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문45】 다음은 호적에 기재하는 인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나 그 수반취득자에게는 우리나라의 호적(제적)이 없는 경우에 그 수반취득자의 성·본(한자포함)은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성·본(한자포함)을 따를 수 있으나 그 명(성을 제외)은 당해 외국의 원지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子)에 대하여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적회복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을 호적(제적)에 의하여 소명하여 호적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문46】 다음은 입양신고 및 파양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호적선례에 의함)

- 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서면으로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입양이 성립된 양자는 양가에 입적하지만 양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양가의 호주를 승계할 경우가 아니면 법정분가에 준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 ④ 전호주가 사망하여 양자가 호주승계를 한 후 생존한 양모와 파양한 경우에는 파양의 효력은 양자와 양부모 전체에 미치므로 파양으로 인하여 호주승계가 개시된다.
- 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면 그 양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고,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문47】 다음은 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출생신고서에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를 수리한다.
- ②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이를 수리한다.
- ③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
- ④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한국인 모(母)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부(父)의 가(家)에 외국인 부(父)의 성(姓)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姓)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건본인의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재한다.

【문48】 다음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신청대상자의 호적등·초본이 필요한 때에 호적상 사망(실종신고, 부재신고를 포함한다)기재된 신청대상자의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본적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② 일본국 관공서가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호적등·초본을 청구한 경우, 주 오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국 외무성을 경유한 것에 한하여 호적등·초본을 송부하되, 외교통상부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일본국 외무성에 송부할 수 있다.
- ③ 한국인과의 신분행위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외에서 우편으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호적등·초본을 직접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 ④ 위임인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호적등·초본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청구사유는 위임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 ⑤ 신청인이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선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문49】 다음은 친권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

-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호적상 친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미성년자의 친부·친모·양부·양모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1항)와 재판지정의 신고(호적법 제82조 제2항)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위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에 기하여 기재한다.
- ③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이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⑤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미성년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하고, 친권자의 본적이 미성년자의 본적과 다른 때에는 친권자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도 기재한다.

【문50】 다음은 호적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창설적 신고는 신고인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시 신고인의 의사능력이 필요하지만 보고적 신고는 기성의 사실을 사후에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어도 상관없다.
- ② 창설적 신고 중에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인지신고, 입양신고, 파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은 구술로 신고하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위임에 의한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외국에 있는 한국인은 사건본인의 본적지에 우편의 방법이나 귀국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인 혼인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따른 호적정리는 할 수 없다.
- ⑤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